##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1 발의연월일: 2020. 10. 7.

발 의 자 : 안호영 · 장철민 · 양이원영

윤준병・윤미향・아수진비

임종성 · 노웅래 · 송옥주

서삼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인권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위상과 법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이에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규약으로 정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개별 교섭과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현행 제2조제4호라목 삭제).
- 나. 노동조합 설립제도 개선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상이한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반려제도를 삭제함(현행 제12조제3항 삭제).

다.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 항).

- 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등 (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 1)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함.
  -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3)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함.
- 마.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등(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안 제29조의3제2항, 안 제30조제3항 신설).
  - 1)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됨.
  -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업종별 또는 산업별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3)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4)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 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바. 부당노동행위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제4호).

#### 법률 제 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임원의 선거등)"을 "(임원의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계약"을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자"를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로, "제한하여서는"을 "제한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근로시간 면제"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로, "고용노동부"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를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로, "결정할"을 "의결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공익위원"을 "제5항제3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 ③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

- 다)을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근로자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3.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제1 호에 따른 노동단체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 제하고 남은 사람

제29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 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3제2항 중 "분리할"을 "분리하거나 교섭단위를 통합할"로, "한 쪽"을 "한쪽"으로, "분리하는"을 "분리하거나 교섭단위를 통합하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섭단위 분리"를 "교섭단위를 분리 하거나 교섭단위를 통합하기 위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지리적 근접성,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섭단위의 통합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본문 중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을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로 한다.

제92조제1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협의"를 "심의 · 협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응하기"를 "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	4
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	
지 아니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u>&lt;삭 제&gt;</u>
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	
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	
<u>다.</u>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5. · 6. (생략)

(생 략)

-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삭 제〉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 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 니하는 경우

④ (생략)

선출되어야 한다.

② (생략)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 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만 종사할 수 있다.

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

5.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②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 |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 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 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 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 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 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 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 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 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 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

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 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 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 자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노동조 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 -----제한해서는----.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로 한다.

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 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지회) ① <u>근로시간 면제</u>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 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 회"라 한다)를 <u>고용노동부</u>에 둔다.

-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 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 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 성된다.

<삭 제>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회) 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
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
<u>회"라 한다)</u>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
도를 심의·의결하고
<u>의결할</u>
③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
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u>위원장</u>은 <u>공익위원</u>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⑤ • ⑥ (생 략)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장이 통보한 근로시간 면제 한 도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전국적 규모의
- 근로자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의 경영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3.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 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에서 제1호에 따른 노동단체 와 제2호에 따른 경영자단체 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
- ⑥ 위원회의 위원장----제5항

   제3호에 따른 위원----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 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

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

<신 설>

하지 아니하다.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 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 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

세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u>제3항</u>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u> 제3항기한까지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 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 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 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 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 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 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 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

⑤ 제3항과 제4항
⑥ 제5항

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 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①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 항을 준용한다.
- ⑧ (생 략)
-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 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 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 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 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 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

<u>.</u>
<u>⑦</u>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
,
<u>⑧</u> 제6항 및 제7항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ul><li><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li><li>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현</li></ul>
<ul><li>⑨ (현행 제8항과 같음)</li><li>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현행과 같음)</li></ul>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현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현 행과 같음)

다.

- ③ (생략)
-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 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단위를 통합하기 위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②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② (생 략)

<신 설>

합하는----.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교섭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 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지 리적 근접성, 교섭 관행 등을 고 려하여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 앙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 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섭단위의 통합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현행과 같음)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 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 제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1. ~ 3. (생략)
-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 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 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 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 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 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 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 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 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
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
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81조(부당노동행위) ①
1. ~ 3. (현행과 같음)
4
동조합의 운영비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한다.

- 5. (생략)
- ② (생 략)
-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 2. · 3.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2조(벌칙)
<u>&lt;삭 제&gt;</u>
2. · 3. (현행과 같음)